

#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안녕하세요. 이지비즈입니다.

근로기준법1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유급휴가를 연차 소멸시기까지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제공하며, 해당 휴가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연차 개수]

# 1)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2)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연중 신규입사하였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u>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u>를 받게 되며, <u>추가로</u>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즉,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1일(총 16일), 5년이 되는 시점부터 +1일(총 17일)이 되어 **최대 총 2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육아 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자

법적으로 육아 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되어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번의 각 유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연차 생성 및 소멸 시기]

**1) 1년 이상 근로자 :** 연차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를 받게 되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 소멸됩니다. (예, 19년 입사 – 20년 80% 이상 근로 → 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미사용 연차소멸일: 2021년 12월 31일)

2) 1년 미만 근로자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연차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

<sup>1</sup>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61조, 제 62조



#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에 대해 안내하고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연차소멸시기 6 개월 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1 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 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안내)

2) 1 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소멸시기가 끝나기 2 개월 전(1 년 미만 근로자: 1 개월)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연차수당 계산법]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sup>2</sup>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 [참고]

- 1)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2)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
- 3)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sup>2 1</sup>일 통상임금: 월 급여 / 209 \* 8